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토지인도

원 고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, 3, 15, 23, 24, 25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(ㄱ) 부분 21㎡를 철거하고,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5,506,407원 및 2020. 8. 14.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
월 153,11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감정비용은 그중 1/5은 피고가,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, 나머지 소송비용은
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